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2. 1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0년 1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임시회 제1차관광건설위원회(2000. 1. 28)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중 운)

가. 제안이유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불부합한 용어를 변경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설기계관리법의 전문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
- 장비반납의무 이행담보제도 완화
 - 반납비용 예치 의무화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변경

○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

- 정부노임단가 → 건설협회 등 공인된 기관의 노임단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제명이 개정('93. 6. 11)됨에 따라 충청북도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 및 각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

○ 건설기계 임차와 관련 장비반납비용의 예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인건비 적용기준도 1995년부터 정부노임단가에서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하고 있어 현실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 표현이 부적절한 용어의 정비와 충실한 건설기계투입을 위해 계획수립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하겠음

4. 결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 서류 :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제1조중 “차량”을 “자동차”로 하고 제1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 제22조의 제목 및 조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2장 및 제3장의 장 제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6조중 “(이하 “관중기”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 제1항중 “사용코자”를 “사용하고자”로 하고, “기관”을 “기관 및 민간인”으로 하며, 종전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중 민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에 별표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8조 제1항중 종전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9조 제목 및 조문중 “갱신”을 “변경”으로 하고, 제1항중 “중기임차인의”를 “임차인의”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시·군”을 “시·군·출장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관중기”를 “사업소보유건설기계”로 하며 “시공코자”를 “시공하고자”로 한다.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 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중 “이동코자”를 “이동하고자”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를 “예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사용케”를 “사용하게”로 한다.

제16조중 “계기”를 “명시”로 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소장은 도 및 도산하기관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거나 도급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임대또는공사완료후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9조 제3항중 “관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20조중 “미달 또는 초과”를 “초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갱신”을 “변경”으로 한다.

별표2의 제2호 가목중 “정부노임단가”를 “건설협회등 공인된 기관의 노임단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현 | 개 |
|---|--|
| <p>제명 :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 관리조례</p> | <p>제명 :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p> |
| <p>제 1 장 총 칙</p> | <p>제 1 장 총 칙</p>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도로보수 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기, 차량 및 기타 장비(이하 "중기"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_____ _____ 건설기계, 자동차 _____ _____ ("건설기계"--) _____ _____</p> |
| <p>제2조(중기운영관리) ①중기는 충청북도도로 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관리 한다.</p> <p>②~③ (생략)</p> | <p>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건설기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3조(중기기술검사 및 정비등) 사업소장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 검 수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 <p>제3조(건설기계 기술검사 및 정비등) _____ _____ 건설기계 _____ _____</p> |
| <p>제 2 장 중기 사용</p> | <p>제 2 장 건설기계 사용</p> |
| <p>제4조(중기사용) 중기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만, 재해응급복구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 <p>제4조(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는 _____ _____ _____</p> |
| <p>제5조(중기투입계획 수립) 사업소장은 매년 도 2월말까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중기투입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p> | <p>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 수립) _____ _____ 3월말 _____ _____ 건설기계 _____ _____</p> |
| <p>제6조(중기 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 로유지 보수공사중 중기부문공사는 사업</p> | <p>제6조(건설기계 사용설계) _____ _____ 건설기계 _____</p> |

| 현행 | 개정 |
|--|---|
| <p>소 보유중기(이하 "관중기"라 한다) 로 설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중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건설기계(삭 제) 건설기계</p> |
| <p>제7조(중기사용신청) ①사업소 보유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한다)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건설기계 사용하고자 기관 및 민간인() 건설기계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중 민간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에 별표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
| <p>②중기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1에 의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 <p>② (삭 제)</p> |
| <p>제8조(중기사용결정) ①사업소장이 제7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중기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제8조(건설기계 사용결정) ① 건설기계,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으로 이를 갈음한다.</p> |
| <p>②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 <p>② 건설기계</p> |
| <p>제9조(중기사용기간의 갱신) ①사업소장은 중기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 <p>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변경) ① 임차인의 변경</p> |
|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용기간 갱신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② 변경 건설기계 변경</p> |

| 현행 | 개정 |
|---|---|
|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중기 사용기간갱신 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중기사용기간 갱신승인통지로 같음한다.</p> | <p>③-----변경----- -----건설기계----- -----변경----- -----변경----- -----건설기계-----변경-----</p> |
| <p>제10조(중기공사의 도급시공) ①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차선도색공사등의 도급시공에 응할 수 있다.</p> | <p>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 -----시·군·출장소----- -----</p> |
|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중기로 공사를 도급 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중기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기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②-----사업소 보유건설기계----- -----시공하고자----- -----사업소 보유건설기계----- ----- -----건설기계----- -----</p> |
| <p>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 <p>③-----건설기계----- ----- -----</p> |
| <p>④중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 도 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 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④건설기계----- -----건설기계----- ----- -----</p> |
| <p>제11조(중기의 조종 등) ①중기는 사업소 소속 중기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p> | <p>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건설기계----- -----건설기계-----</p> |
|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중기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 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또는중기 반납시</p> |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 |
|--|--|
| <p><u>중기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u></p> <p>제12조(중기의 투입 및 회수) ①중기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p> <p>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중기의 작업장소를 <u>이동코자</u>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일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중기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중기를 현장에서 일시반납, 회수할수 있으며 반납, 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 <p>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건설기계-----</p> <p>②----- 건설기계-----<u>이동하고자</u>-----</p> <p>③-----건설기계-----</p> <p>④----- 건설기계----- -----건설기계-----</p> |
| <p>제13조(중기반납비용 예치) ①중기를 민간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 중기사용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중기반납일자에 반납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반납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u>예치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의 예치금은 임차인이 반납일자에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회수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p> | <p>제13조(건설기계반납비용 예치) ①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 -----<u>예치할 수 있다.</u>-----</p> <p>②----- -----건설기계-----</p> |

| 현행 | 개정 |
|---|---|
| <p>③중기반납 예치금은 중기회수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p> | <p>③건설기계 건설기계</p> |
| <p>제14조(사용중기의 망실 또는 훼손) ①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건설기계</p> |
| <p>②중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p> | <p>②건설기계 건설기계</p> |
| <p>③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p> | <p>③ (현행과 같음)</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차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중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 3. 임차인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 건설기계 3. (현행과 같음) |
| <p>제 3 장 중기사용료</p> | <p>제 3 장 건설기계 사용료</p> |
| <p>제15조(사용료 구분등) ①중기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경비(조종사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p> | <p>제15조(사용료 구분등) ①건설기계 건설기계</p> |
| <p>②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중기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중기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 <p>② 건설기계 사용하게 건설기계</p> |
|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중기사용료는 별표</p> |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건설기계 건설기계</p> |

| 현행 | 개정 |
|--|---|
| <p>2의 중기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중기사용료표에 개기되지 않은 중기의 사용료는 사업소장이 정하여 운영한다.</p> | <p>건설기계 건설기계 명시 건설기계</p> |
| <p>제17조(사용료 감면) ①사업소장은 별표3에 의한 중기 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중기 가동증진을 위하여 중기 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p> | <p>제17조(사용료 감면) ①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중기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중기사용시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사용. 다만, 중기 운반용 중기는 제외</p> <p>2.중기운반용 중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시간을 기준</p> <p>3.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중기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는 중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p> <p>②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중기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거 정수한다.</p> | <p>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 건설기계</p> <p>1. 건설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p> <p>2. 건설기계 건설기계</p> <p>3. 건설기계 건설기계</p> <p>② () 건설기계</p> |

| 현행 | 개정 |
|---|---|
| <p>제19조(사용료 징수) ①사업소장은 임차인에게 제18조의 사용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사 착공전에 납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유류대는 임차인이 현지부담 주유하고 조종사 조수의 숙식비는 중기투입시 선지급 후 사용료 징수시 사용료에 합산 징수한다.</p> <p>②민간인에게 중기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 전액을 중기 투입전에 선 징수하여야 한다.</p> <p>③관공사를 도급받은 도급업자가 관중기를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시행기관의 장이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 징수할 수 있다</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 <p>제19조(사용료 징수) ①사업소장은 도 및 산하기관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거나 도급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임대 또는 공사완료후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건설기계----- -----건설기계-----건설기계----- -----</p> <p>③-----건설기계----- ----- -----</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 -----초과----- ----- -----</p> |
| 제 4 장 기 타 | 제 4 장 기 타 |
| <p>제21조(잡수입) 제10조 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중기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p> | <p>제21조(잡수입) ----- -----건설기계----- -----</p> |
| <p>제22조(중기대체비 충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잡수입된 중기사용료는 전액 중기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 <p>제22조(건설기계대체비 충당) ----- -----건설기계-----건설기계----- -----</p> |
| <p>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

| 현 | 행 |
|--|---|
| (별표1) 중기임대차계약서 | |
| 별지 목록 중기임대차에 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중기를 사용한다 | |
| 1.중기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일간 | |
| 2.공사명 및 위치 | |
| 3.사용중기명세 : 별첨 명세표 참조 | |
| 제2조(사용료) ①중기사용료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금 원정으로 한다 | |
| ②을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 1항의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3조(인수) ①중기의 수송비용(인수 및 반납)과 수송도중 비용 은 그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중기를 인수하지 못한 때 에는 인수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제4조(중기의 교체) 사용한 중기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 사용불능케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 |

| 개 | 정 |
|---|---|
| (별표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 |
| 별지 목록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 |
|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 |
| 1.건설기계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일간 | |
| 2.공사명 및 위치 | |
| 3.사용건설기계명세 : 별첨 명세표 참조 | |
| 제2조(사용료) ①건설기계사용료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금 원정으로 한다 | |
| ②을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 1항의 사용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
| 제3조(인수) ①건설기계의 수송비용(인수 및 반납)과 수송도중 비용은 그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 |
| ②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건설기계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
| 제4조(건설기계의 교체) 사용한 건설기계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불능케 되었거나 갑이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 |

| 현 행 |
|---|
| <p>제5조(고장수리) ①울은 사용기간중 <u>중기</u>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갑은 울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현장정비 이행) 갑은 <u>중기</u>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기간중 <u>재해용급복구등</u>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울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계약목적 이외에 <u>중기</u>를 사용한 때 4. 사용료를 미납한 때 5. <u>중기</u>의 일일정비 불이행시 6. 가동시간 초과운행시 <p>제8조(사고책임) <u>중기</u>의 운반수송도중 또는 울의 과실로 대여기간 중에 발생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후수습등은 울의 책임으로 한다</p> <p>제9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도로보수<u>중기</u>운영관리조례에 의한다</p> <p>제10조(잡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울의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봉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

| 개 정 |
|--|
| <p>제5조(고장수리) ①울은 사용기간중 <u>건설기계</u>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p> <p>②갑은 울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현장정비 이행) 갑은 <u>건설기계</u>의 예방정비로서 손질, 주유 및 정기적인 부속교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기간중 <u>재해용급복구등</u>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울이 관리태만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빈번하고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계약목적 이외에 <u>건설기계</u>를 사용한 때 4. 사용료를 미납한 때 5. <u>건설기계</u>의 일일정비 불이행시 6. 가동시간 초과운행시 <p>제8조(사고책임) <u>건설기계</u>의 운반수송도중 또는 울의 과실로 대여기간중에 발생한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후수습등은 울의 책임으로 한다</p> <p>제9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도로보수<u>건설기계</u>운영관리조례에 의한다</p> <p>제10조(잡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울의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봉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

| | | 현행 | | |
|---|-------|----|---|---|
| | | 년 | 월 | 일 |
| 갑 | 계약담당관 | | | |
| 주 | 소 | | | |
| 기 | 관명 | | | |
| 직 | 위 | | | |
| 성 | 명 | | | 인 |
| 울 | 차인 | | | |
| 입 | 소 | | | 인 |
| 주 | 명 | | | |
| 성 | 보 | | | 인 |
| 연 | 증 | | | |
| 대 | 인 | | | 인 |
| 주 | 소 | | | |
| 성 | 명 | | | 인 |
| 주 | 소 | | | |
| 성 | 명 | | | 인 |

(별표 2)

중기사용료산출기준표

1. 중기기본사용료 : 별표 제3호
2. 중기운전경비
 - 가. 중기조종사 인건비 :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함
 - 나. 중기조종사 숙식비 : 충청북도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정액
 - 다. 중기유류대 : 정부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 라. 중기현장정비비
 - 1)정비품명 : 삽날류,타이어,냉마,윤활유,기타 소모성 중기부품
 - 2)소모기준 : 정부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 | | 개정 | | |
|---|-------|----|---|---|
| | | 년 | 월 | 일 |
| 갑 | 계약담당관 | | | |
| 주 | 소 | | | |
| 기 | 관명 | | | |
| 직 | 위 | | | |
| 성 | 명 | | | 인 |
| 울 | 차인 | | | |
| 입 | 소 | | | 인 |
| 주 | 명 | | | |
| 성 | 보 | | | 인 |
| 연 | 증 | | | |
| 대 | 인 | | | 인 |
| 주 | 소 | | | |
| 성 | 명 | | | 인 |
| 주 | 소 | | | |
| 성 | 명 | | | 인 |

(별표 2)

건설기계사용료산출기준표

1. 건설기계기본사용료 : 별표 제3호
2. 건설기계운전경비
 - 가. 건설기계조종사 인건비 : 건설협회등 공인된 기관의 노임 단가기준에 의함
 - 나. 건설기계조종사숙식비:충청북도여비조례에 규정된 여비정액
 - 다. 건설기계유류대:정부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 라. 건설기계현장정비비
 - 1)정비품명 : 삽날류,타이어,냉마,윤활유,기타 소모성 건설기계부품
 - 2)소모기준 : 정부건설공사표준품셈상의 소모기준에 의함

| 현 행 |
|-----------------------------------|
| (별표 1) 중기공사 투입대상 및 사업소 지원중기 구분 |
| 1. 중기공사 투입대상 |
| 1-1 불도우저 |
| 1-2 로우더 |
| 1-3 모우터그레이더 |
| 1-4 굴삭기 |
| 1-5 로울러 |
| 1-6 공기압축기 |
| 1-7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 1-8 아스팔트 살포기 |
| 1-9 아스팔트 휘니셔 |
| 1-10 아스팔트 재생기 |
| 1-11 아스팔트 혼합기 |
| 1-12 쇄석기 |
| 1-13 골재 선별기 |
| 1-14 골재 살포기 |
| 1-15 벨트 콤베이어 |
| 1-16 도로보수차 |
| 1-17 담프트럭 |
| 1-18 스타 빌라이저 |
| 1-19 포장파쇄기 (절단기 포함) |
| 1-20 심층다짐기 |
| 1-21 표면진동 다짐기 |
| 1-22 차선도색기 (제거기 포함) |
| 1-23 화물용 중형차량 |

| 현 행 |
|---------------------------------------|
| (별표 1) 건설기계공사 투입대상 및 사업소 지원건설기계 구분 |
| 1. 건설기계공사 투입대상 |
| 1-1 불도우저 |
| 1-2 로우더 |
| 1-3 모우터그레이더 |
| 1-4 굴삭기 |
| 1-5 로울러 |
| 1-6 공기압축기 |
| 1-7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
| 1-8 아스팔트 살포기 |
| 1-9 아스팔트 휘니셔 |
| 1-10 아스팔트 재생기 |
| 1-11 아스팔트 혼합기 |
| 1-12 쇄석기 |
| 1-13 골재 선별기 |
| 1-14 골재 살포기 |
| 1-15 벨트 콤베이어 |
| 1-16 도로보수차 |
| 1-17 담프트럭 |
| 1-18 스타 빌라이저 |
| 1-19 포장파쇄기 (절단기 포함) |
| 1-20 심층다짐기 |
| 1-21 표면진동 다짐기 |
| 1-22 차선도색기 (제거기 포함) |
| 1-23 화물용 중형차량 |

| 현 행 | 개 정 |
|---|---|
| <p>1-24 살수차 1-25 트럭트랙타(트레일러 포함) 1-26 사다리차 1-27 제설차 1-28 담프로우더 1-29 기타</p> <p>2. 사업소 지원중기</p> <p>2-1 이동 정비차 2-2 승용차량 (소형, 지프형) 2-3 승합용 차량 (대, 중, 소형) 2-4 화물용 소형차량 (2톤 이하) 2-5 지게차 2-6 기타</p> | <p>1-24 살수차 1-25 트럭트랙타(트레일러 포함) 1-26 사다리차 1-27 제설차 1-28 담프로우더 1-29 기타</p> <p>2. 사업소 지원건설기계</p> <p>2-1 이동 정비차 2-2 승용차량 (소형, 지프형) 2-3 승합용 차량 (대, 중, 소형) 2-4 화물용 소형차량 (2톤 이하) 2-5 지게차 2-6 기타</p> |